

외국환거래업무 취급세칙

제정	1999. 3. 31.	총재결재	국심	6011- 217
개정	2000. 12. 30.	총재결재	국심	6011- 3
	2001. 10. 4.	총재결재	국외	6011- 815
	2002. 3. 18.	총재결재	국심	6011- 113
	2004. 8. 25.	총재결재	국제	6011- 587
	2006. 2. 16.	총재결재	외환조사팀-	37
	2007. 8. 1.	총재결재	국제기획팀-	1209
	2007. 10. 16.	총재결재	외환심사팀-	773
	2007. 12. 28.	총재결재	국제기획팀-	2102
	2008. 1. 17.	총재결재	국제기획팀-	93
	2008. 3. 20.	총재결재	국제기획팀-	486
	2008. 10. 27.	총재결재	국제기획팀-	1948
	2008. 12. 1.	총재결재	국제기획팀-	2254
	2009. 3. 2.	총재결재	국제기획팀-	469
	2010. 6. 22.	총재결재	국제기획팀-	984
	2010. 7. 9.	총재결재	국제기획팀-	1146
	2011. 7. 15.	총재결재	국제총괄팀-	864
	2011. 7. 26.	총재결재	국제총괄팀-	939

제1장 총칙

제1-1조(목적) 이 세칙은 「외국환거래법」(이하 “「법」”이라 한다), 「외국환거래법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및 「외국환거래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과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 금융거래 보고법」”이라 한다),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특정 금융거래 보고법 시행령」”이라 한다)에 따라 한국은행총재에게 위탁된 외국환거래업무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외국환은행등

제1절 외국환포지션 관리

제2-1조(외국환포지션의 구분) ① 외국환은행의 외국환포지션(「규정」 제2-9조에 따른 외국환포지션중 종합포지션 및 선물환포지션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종합매입초과포지션은 각 외국통화의 현물자산잔액 및 선물자산잔액의

합계액이 현물부채잔액 및 선물부채잔액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차액을 말하며, 종합매각초과포지션은 각 외국통화의 현물부채잔액 및 선물부채잔액의 합계액이 현물자산잔액 및 선물자산잔액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차액을 말한다.

2. 선물환매입초과포지션은 각 외국통화의 선물자산잔액이 선물부채잔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차액을 말하며, 선물환매각초과포지션은 각 외국통화의 선물부채잔액이 선물자산잔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차액을 말한다.

② 외국환은행의 종합포지션은 각 외국통화별 종합매입초과포지션의 합계와 종합매각초과포지션의 합계 중 큰 것으로 산정하며, 선물환포지션은 각 외국통화별 선물환매입초과포지션의 합계에서 각 외국통화별 선물환매각초과포지션의 합계를 차감하여 산정한다.

제2-2조(외국환포지션의 자산·부채의 범위) 「영」 제21조제2호에 따른 외화자산 및 부채의 구체적인 범위는 한국은행 국제국장(이하 “국제국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하는 「금융기관 외화대차대조표 작성요령」을 기준으로 국제국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3조(한도관리) ① 외국환은행은 국제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별 외국환포지션 상황을 매월 한국은행총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종합포지션한도는 매영업일 잔액을 기준으로 관리한다. 다만, 토요일 및 뉴욕외환시장이 휴일인 날의 외국환포지션이 한도를 초과한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의 외국환포지션과 합산한 평균잔액을 기준으로 관리한다.

③ 선물환포지션한도는 직전영업일로부터 과거 1개월 동안의 일별 선물환포지션잔액의 산술평균을 기준으로 매영업일별로 관리한다.

④ 「규정」 제2-9조의2제1항 및 제2항의 외국환포지션한도는 자기자본을 미달러화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이 경우 적용되는 대미달러 환율은 국제국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⑤ 국제국장은 외국환은행에 대하여 외국환포지션의 한도 관리에 필요한 증빙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장부 및 서류의 열람을 요구할 수 있다.

제2-4조(별도한도의 인정) ① 「규정」 제2-9조의2제3항에 따른 이월이익잉여금의 환리스크 헤지를 위한 외국환매입분에 대한 별도한도 인정기간은 1년 이내로 하며, 외국환포지션 한도의 초과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외국환은행에 대한 별도한도 인정기간은 2년 이내로 하되 필요시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별도한도 인정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국제국장이 정한다.

제2-5조(외국환포지션 한도관리 제외대상) ① 외국환은행의 구조적 요인에

따라 발생하는 종합포지션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환매입분 및 외국환매각분은 종합포지션 한도관리대상에서 제외한다.

1. 자본금 또는 영업기금(외국은행 국내지점의 갑기금 및 제 적립금을 말한다)의 환리스크 헤지를 위한 외국환매입분
2. 외국은행 국내지점이 국내에서의 영업에 충당하기 위하여 외화자금을 환매조건부로 한국은행에 내국지급수단을 대가로 매각함에 따라 발생하는 외국환매각분 및 외국환매입분
3. 외국은행 국내지점이 이월이익잉여금 환리스크헤지를 위해 별도한도로 인정받은 외국환매입분
4. 외국환은행이 통화옵션거래에 따라 발생하는 외국환포지션을 델타헤징 방식으로 자체 관리하는 경우 통화옵션거래 및 델타헤징 방식에 의해 발생하는 외국환매입분 또는 외국환매각분

② 외국환은행의 구조적 요인에 따라 발생하는 선물환포지션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물환매입분 및 선물환매각분은 선물환포지션 한도관리대상에서 제외한다.

1. 자본금 또는 영업기금(외국은행 국내지점의 갑기금 및 제 적립금을 말한다)의 환리스크 헤지를 위한 선물환매입분
2. 외국은행 국내지점이 국내에서의 영업에 충당하기 위하여 외화자금을 환매조건부로 한국은행에 내국지급수단을 대가로 매각함에 따라 발생하는 선물환매입분
3. 외국은행 국내지점이 이월이익잉여금 환리스크헤지를 위해 별도한도로 인정받은 선물환매입분과 외국환은행이 선물환포지션 제도 도입전 거래에 대해 별도한도로 인정받은 선물환매입분 또는 선물환매각분
4. 외국환은행이 통화옵션거래에 따라 발생하는 외국환포지션을 델타헤징 방식으로 자체 관리하는 경우 델타헤징 금액에 상응하지 않는 통화옵션거래

제2절 예금

제2-6조(계정별 예금의 종류) ① 「규정」 제2-6조의2제2항에 따른 계정별 예금의 종류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대외계정 : 당좌예금, 보통예금, 통지예금, 정기예금, 정기적금
2. 거주자계정 : 당좌예금, 보통예금, 통지예금, 정기예금, 정기적금

3. 해외이주자계정 : 당좌예금, 보통예금, 통지예금, 정기예금
 4. 비거주자 원화계정 : 당좌예금, 보통예금, 정기예금, 저축예금, 기업자유예금. 다만, 투자전용 비거주자 원화계정은 당좌예금 및 보통예금에 한함.
 5. 비거주자 자유원계정 : 당좌예금, 보통예금, 정기예금, 저축예금, 기업자유예금
 6. 계정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 별단예금
- ② 제1항제4호에도 불구하고 「영」 제10조제2항제1호, 제2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자와 국민인 비거주자(국내에서 사용하기 위한 경우에 한함)가 개설할 수 있는 예금의 종류는 개설은행의 다른 원화예금의 종류와 동일하다. 다만, 양도성 예금증서는 제외한다.

제3절 외화대출 및 외화채무증권 투자

제2-7조(정의) 이 절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외화대출”이란 외국환은행이 거주자에게 제공하는 외화대출을 말하며, 「은행업감독업무 시행세칙」 <별표4-1>의 「외국환계정 회계처리기준」에 따른 “외화대출금”외에 국제국장이 정하는 대내외화사모사채를 포함한다.
2. “외화채무증권”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에 따른 채무증권으로서 거주자가 국내에서 발행하고 외국통화로 표시된 것을 말한다. 다만, 국제국장이 정하는 대내외화사모사채를 제외한다.

제2-8조(적용범위) 다음 각 호의 업무에 대하여는 제2-9조 및 제2-11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외국환은행이 「공공차관의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외국으로부터 도입한 차관자금의 전대
2. 한국수출입은행의 외화대출업무

제2-9조(외화대출의 용도제한) ① 외국환은행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금의 지원을 위한 외화대출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원화로 환전하여 사용할 목적으로 제공하는 자금
2. 기타 해외에서 사용함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자금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외국환은행은 2010년 6월 30일자 중소기업체에 대한 해당 외국환은행의 국내 시설자금 대출잔액을 한도로 중소기업체에 대하여 국내 시설자금 용도의 외화대출을 제공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중소기업체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서 정한 중소기업으로서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제조업을 영위하는 업체를 말한다.

제2-10조(외화채무증권에 대한 투자제한) 외국환은행은 원화로 환전하여 사용할 목적으로 발행된 외화채무증권을 매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11조(심사 및 사후관리) 외국환은행은 외화대출 취급시 또는 외화채무증권 투자시 제2-9조 또는 제2-10조에 따른 제한에 저촉되지 아니함을 서면으로 확인하여야 하며, 대출 또는 투자 후에는 국제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용도의 유용여부를 파악하여야 한다.

제2-12조(외국환업무취급기관의 외화대출 등) 이 절의 규정은 외국환은행 이외의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이 「규정」이 정하는 범위내에서 행하는 외화대출 또는 외화채무증권 투자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4절 외환건전성부담금

제2-13조(부과대상 외화부채등의 범위) 「영」 제21조의2의 부담금납부의무자(이하 “부담금납부의무자”라 한다)의 외환건전성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 부과대상 외화부채등(이하 “비예금성외화부채등”이라 한다)은 「은행업감독업무 시행세칙」 <별표 4-1>의 「외국환계정 회계처리기준」에 따른 부채계정(이하 “외화부채등”이라 한다)에서 외화예수금 및 「규정」 제2-11조의2의 제외대상 외화부채계정을 차감하여 산정한다.

제2-14조(만기산정 기준) ① 「영」 제21조의3의 부과요율 적용을 위한 비예금성외화부채등의 구간별 만기는 계약만기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계약만기일 이전에 상환 또는 청산된 경우에는 상환 또는 청산일까지를 만기로 한다.

② 제1항의 구간별 계약만기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만기 1년 이하 : 365일 이내
2. 만기 1년 초과, 3년 이하 : 366일~1,095일
3. 만기 3년 초과, 5년 이하 : 1,096일~1,825일
4. 만기 5년 초과 : 1,826일 이상

③ 만기산정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국제국장이 정한다.

제2-15조(잔액산정 기준) ① 부담금 산정을 위한 비예금성외화부채등의 잔액은 비예금성외화부채등을 제2-14조의 만기별로 구분하고, 제2-16조의 잔액산

정 대상기간중 일별잔액의 합을 365(윤년일 경우 366)로 나누어 산정한다.

② 추가부담금 산정을 위한 비예금성외화부채등의 잔액 증가분은 비예금성외화부채등을 제2-14조의 만기별로 구분하고, 추가 부과요율 적용기간 동안 일평균잔액에서 추가 부과요율 적용일 직전 3개월간의 일평균잔액을 차감한 잔액에 적용기간 일수를 곱한 후 365(윤년일 경우 366)로 나누어 산정한다. 다만, 잔액 증가분을 계산한 값이 음수인 경우에는 0으로 간주한다.

③ 잔액산정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국제국장이 정한다.

제2-16조(잔액산정 대상기간) ① 부담금납부의무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담금의 잔액산정 대상기간은 부담금납부의무자의 사업연도 개시일로부터 종료일까지로 한다.

② 부담금납부의무자가 신설된 경우 최초로 납부하여야 할 부담금의 잔액산정 대상기간은 외국환업무 등록일로부터 해당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로 한다.

③ 부담금납부의무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납부하여야 할 부담금의 잔액산정 대상기간은 해당 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 개시일로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장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로 한다.

1. 관계법령에 따른 영업인가의 취소, 파산선고, 해산 및 업종전환의 경우
: 인가 취소일, 파산선고일, 해산등기일, 업종전환에 대한 정관의 변경 등기일
2. 외국 금융기관 국내지점 폐쇄의 경우
: 국내지점 폐쇄일

제2-17조(부담금의 산정) 부담금납부의무자가 사업연도 종료 후 납부해야 하는 부담금은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1. 정상부담금 : 제2-15조제1항에 따라 산정한 잔액에 「영」 제21조의3에 따른 부과요율을 곱하여 산정
2. 추가부담금 : 제2-15조제2항에 따라 산정한 잔액 증가분에 「법」 제11조의2제3항에 따른 추가 부과요율을 곱하여 산정
3. 정정부담금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이미 납부한 사업연도의 제1호 및 제2호 부담금 산정대상 일평균잔액 및 부과요율을 정정하여 산정

가. 비예금성외화부채등이 계약만기 이전에 중도상환 또는 청산되는 경우나, 추가 부과요율이 사업연도 종료월(이하 “결산월”이라 한다)을 포함하는

기간에 적용되어 추가 부과요율 적용이 완료된 시점까지의 일평균잔액 증가분이 변경되는 경우

제2-18조(부담금보고서) ① 부담금납부의무자는 다음 각 호의 부담금보고서를 국제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1. 분기보고서 : 외화부채등의 일별 잔액을 제2-14조부터 제2-16조까지의 기준 등에 따라 작성하여 매분기 익월말 이내에 제출
2. 연간보고서 : 제1호 분기보고서의 일별 잔액의 합을 365(윤년일 경우 366)로 나누고, 제2-17조에 따른 부담금을 산정하여 결산월 후 3개월 이내에 제출
3. 정정보고서 : 제2-17조제3호에 따른 정정부담금의 세부 산출근거를 결산월 후 3개월 이내에 제출

② 부담금납부의무자는 제1항제2호의 연간보고서 제출시 사업연도의 결산자료 등을 반영한 확정자료를 보고하여야 한다.

③ 부담금납부의무자는 제2-16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한 월을 해당 사업연도의 결산월로 간주하여 부담금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국제국장은 부담금의 부과·징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부담금납부의무자에게 부담금보고서와 관련한 세부자료를 서면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제2-19조(납부고지) ① 국제국장은 부담금납부의무자의 결산월 후 네 번째 월(이하 “납부고지월”이라 한다)중에 부담금납부의무자에게 납부대상 부담금의 납부를 고지하여야 한다.

② 부담금납부의무자가 제1항에 따른 납부고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국제국장에게 납부고지서의 발급을 다시 요청할 수 있다.

③ 분할납부의 신청 및 부담금의 조정을 위한 기준일이 되는 납부고지일은 국제국장이 정하는 납부고지 방법중 어느 하나로 고지한 날중 가장 빠른 날로 한다.

④ 제2-16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한 월 후 네 번째 월, 제2-25조에 따라 분할납부가 취소되는 경우에는 분할납부의 취소 결정일이 속한 월, 제2-28조제2항에 따라 부담금의 조정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조정결정일이 속한 월을 각각 납부고지월로 간주하여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⑤ 납부고지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국제국장이 정한다.

제2-20조(부담금·가산금의 납부 및 납부기한) ① 부담금납부의무자는 제 2-19조에 따라 납부고지된 부담금을 납부고지 월의 다음 월(이하 “납부기한”이라 한다)까지 한국은행총재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② 부담금납부의무자가 제1항의 납부기한까지 부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체납기간에 따라 「영」 제21조의8의 산식에 의한 가산금 및 증가산금을 더하여 한국은행총재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증가산금을 더하여 납부하는 기간은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③ 납부기한 종료일이 뉴욕 외환시장 휴일인 경우에는 직전 영업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제2-21조(납부통화) 제2-20조의 부담금 및 가산금(증가산금을 포함한다)은 미 달러화로 납부하여야 한다.

제2-22조(납부방법) ① 부담금 및 가산금(증가산금을 포함한다)을 납부하고자 하는 부담금납부의무자는 한국은행에 개설된 외화예수금계정을 통하여 납부신청 및 납부신청액에 해당하는 외화자금 예치신청을 각각 하여야 한다.

② 가산금(증가산금을 포함한다)은 부담금과 분리하여 납부할 수 없다.

③ 제1항의 납부신청은 국제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담금 및 가산금(증가산금을 포함한다) 납부 예정일로부터 최소 1일 전에 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외화자금 예치신청은 부담금 납부예정일의 외화자금 예치신청 입력 종료시각 이전에 하여야 한다.

제2-23조(분할납부) ① 부담금납부의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에 해당되어 부담금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2-19조의 납부고지를 받은 후 15일 이내에 국제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담금의 분할납부를 신청할 수 있다.

1. 사업여건의 악화로 경영상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2. 부담금의 일시납부에 따라 자금사정에 현저한 어려움이 예상되는 경우
3. 천재지변, 전시·사변, 국내외 경제사정의 중대하고 급격한 변동,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태가 발생하여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국제국장은 제1항에 따른 분할납부 신청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납부대상 부담금의 2분의 1(제1차분)은 납부기한까지 납부하고, 나머지 2분의 1(제2차분)은 납부기한 후 5개월 이내에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③ 국제국장은 제1항의 분할납부 신청이 있는 경우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분할납부 승인 여부를 심사하여 그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부담금의 분할납부를 승인하는 경우에는 분할납부 금액, 납부기간 및 그 밖에 분할납부에 필요한 사항을 함께 통지하여야 한다.

④ 국제국장은 제1항의 분할납부에 관한 세부자료를 서면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제2-24조(분할납부에 관한 담보) ① 국제국장은 제2-23조에 따라 분할납부를 승인하는 경우에는 분할납부하는 금액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담보의 종류는 국제, 정부가 원리금 상환을 보증한 채권 및 한국은행 통화안정증권으로 하며, 이러한 담보가 부족한 경우에는 국제국장이 「한국은행의 금융기관예금규정」 제2조에 따른 당좌예금을 담보로 인정할 수 있다.

제2-25조(분할납부의 취소) 국제국장은 분할납부를 승인받은 부담금납부의 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분할납부의 승인을 취소하고 이에 관계되는 부담금을 일시에 징수할 수 있다.

1. 제1차분 또는 제2차분 부담금 납부금액을 정하여진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
2. 담보의 변경이나 그 밖의 담보보전에 필요한 요청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3. 재산상황이나 그 밖의 사정의 변화로 분할납부의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관계법령에 따른 영업인가 취소, 파산선고, 해산, 업종전환 또는 외국 금융기관 국내지점 폐쇄의 경우

제2-26조(독촉장 발급 및 가산금 고지) ① 국제국장은 부담금납부의무자가 제2-20조제1항의 납부기한까지 부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납부기한이 지난 후 10일 이내에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부담금의 납부를 독촉하는 독촉장을 발급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부담금의 납부를 독촉하는 경우에는 「영」 제21조의8에 따른 가산금(증가산금을 포함한다)을 더하여 납부하도록 고지한다.

제2-27조(부담금 및 가산금의 강제징수) 부담금납부의무자가 제2-26조의 독촉장에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대상금액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국세채납처분의 예에 따라 부담금과 가산금(증가산금을 포함한다)을 강제징수한다.

제2-28조(이의신청 및 부담금의 조정 등) ① 부담금납부의무자의 「영」 제21조의10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은 납부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국제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할 수 있다.

② 국제국장은 제1항의 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처리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부담금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부담금을 다시 부과·징수하거나 환급하여야 한다.

③ 국제국장은 제2항의 부담금의 조정을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신청 금융회사 등에 임점하여 부담금 산정의 적정성을 확인할 수 있다.

④ 국제국장은 「영」 제21조의10제4항에 따라 부담금납부의무자에 대한 검사 등을 통해 이미 납부한 부담금을 조정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부담금 및 가산금(증가산금을 포함한다)을 다시 부과·징수하거나 환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부담금 및 가산금(증가산금을 포함한다)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은 이 절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29조(기한의 특례) 제2-19조, 제2-20조, 제2-23조, 제2-28조의 납부고지, 납부기한, 분할납부 신청 및 결과 통지, 이의신청·결과 통지 및 부담금의 재부과·징수에 따른 기한에 관하여는 「영」 제21조의11에 따른 기한의 특례를 적용한다.

제3장 환전영업자

제1절 환전영업자의 의무

제3-1조(환전영업자의 의무) ① 환전영업자는 여행자 등 고객에게 환전의 편의를 제공하여야 하며 환전업무를 영위함에 따른 확인 및 보고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 환전영업자는 환전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는 충분한 영업공간을 확보하고 등록된 영업장소에서 영업하여야 한다.

③ 환전영업자는 국문 및 영문으로 표시된 환전업무 영위 표지를 하여야 하며 매일 당일의 환전영업자의 외국환매매율을 영업장에 게시하여야 한다.

④ 환전영업자는 환전업무에 관하여 일자, 매각자(매입자) 성명, 환전금액, 적용환율, 여권번호 또는 주민등록번호 등 거래내용을 기록하고 관련서류를 보존하여야 한다.

제3-2조(환전장부의 비치 및 관리) ① 환전영업자는 제3-1조제4항에 따른 거

래내용을 환전장부에 기록하고 당해 거래를 취급한 담당자 및 확인자가 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② 환전장부 및 기타 환전관계 서류류는 당해 연도 이후 5년간 보존하여야 하며 환전장부 등 제 서식은 국제국장이 정한다.

제3-3조(환전증명서의 사용) ① 환전영업자는 「규정」 제3-2조제1항에 따른 외국환매각신청서와 외국환매입증명서(이하 “환전증명서”라 한다) 용지를 지정거래외국환은행으로부터 공급받아 당해 환전영업자의 상호와 대표자명을 표시하여야 하며, 환전시 환전증명서를 사용하여야 한다.

②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은 일련번호가 기재되고 “환전영업자용”이 표시된 환전증명서를 거래환전영업자에게 공급하여야 한다.

③ 환전증명서의 사용요령 등은 국제국장이 정한다.

제3-4조(보고) ① 환전영업자는 환전업무현황을 매분기별로 익월 10일까지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은 매분기 익월 20일까지 당해 환전영업자를 관할하는 국제국장 또는 한국은행 지역본부장(이하 “각 지역본부장”이라 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은 제1항의 제출을 받는 경우 환전장부에 기록된 환전·재환전 실적과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국제국장과 각 지역본부장은 관할 환전영업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2절 환전영업자에 대한 검사 및 제재

제3-5조(환전영업자에 대한 검사) ① 「규정」 제10-7조제1항 및 「특정 금융거래 보고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른 환전영업자에 대한 검사는 국제국장 및 각 지역본부장이 행하며 관할지역에 소재하는 환전영업자중 검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환전영업자에 대하여 수시검사를 실시한다.

② 국제국장은 제1항의 검사를 위한 검사기준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제3-6조(제재) ① 국제국장과 각 지역본부장은 환전영업자에 대하여 위규사항별 구분에 따라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경위서 징구

가. 환전업무현황 보고서의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앞 제출 지연

나. 환전업무 등록내용변경 신고 지연

다. 환전영업자 표지 및 외국환매매율 게시 불이행

라. 환전증명서 금액정정 및 누락

마. 기타 가목 내지 라목에 준하는 사항의 위반

2. 전말서 징구

가. 환전업무현황 보고서의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앞 미제출

나. 환전업무 등록내용변경 미신고

다. 환전장부 불비치

라. 거래외국환은행의 미지정 또는 지정거래외국환은행 이외의 외국환은행에 대한 매입외화의 매각, 예치

마. 경위서 징구후 동일사항 재차위반 또는 1회 검사시 경위서 3건 이상 징구

바. 검사결과 지적사항 및 기타 시정명령에 대한 조치 지연

사. 「특정 금융거래 보고법」 및 「특정 금융거래 보고법 시행령」에 규정된 고객주의의무 위반, 혐의거래 및 고액현금거래의 보고지연, 보고서 등의 미보존, 보고책임자 미통보

아. 기타 가목 내지 사목에 준하는 사항의 위반

3. 영업정지

가. 환전업무현황의 허위 보고

나. 환전증명서 불사용 또는 허위사용

다. 거주자에 대한 외국통화 매도

라. 재환전 한도초과

마. 등록된 영업장소 이외에서의 영업

바. 검사결과 지적사항 및 기타 시정명령에 대한 미조치

사. 전말서 3건 이상(1년기준)

아. 「특정 금융거래 보고법」 및 「특정 금융거래 보고법 시행령」에 규정된 혐의거래 및 고액현금거래의 미보고, 허위보고, 보고 관련 거래상대방 또는 관계인에 대한 보고사실 누설

자. 기타 가목 내지 아목에 준하는 사항의 위반

4. 등록의 취소

가. 환전업무 등록, 등록내용변경 신고시 제출서류의 허위 작성, 위조 또는 변조

나. 영업정지 3회 이상

다. 「법」, 「영」 또는 이에 따른 명령 및 「특정 금융거래 보고법」, 「특

- 정 금융거래 보고법 시행령」 또는 이에 따른 명령중 중요사항을 위반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환전 및 재환전을 거부하는 경우
- 라. 환전실적이 없거나 또는 환전실적이 극히 부진하여 환전영업을 더이상 존속시켜야 할 필요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 마. 당해 환전영업자를 관할하는 시장, 군수가 「지방세법」에 따른 면허세미납자에 대하여 등록취소를 요청한 경우
- ② 국제국장 또는 각 지역본부장이 제1항제4호의 등록의 취소를 하는 경우에는 「법」 제12조제3항의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 ③ 각 지역본부장은 환전영업자의 위규사항에 대한 제재조치 내용을 다음해 1월말까지 국제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4장 외국환중개회사

제4-1조(외환시장 거래질서 유지 의무) 외국환중개회사는 관계 법령을 준수하고 공정·신속·정확한 중개를 함으로써 외환시장의 거래질서를 유지하여야 한다.

제4-2조(업무제한) 외국환중개회사는 거래의 중개를 위탁받은 경우에는 당해 거래를 중개하지 아니하고 자기가 거래의 상대방이 되어 거래를 성립시켜서는 아니된다.

제4-3조(매매기준율 등 산출) 기획재정부장관으로부터 환율고시업무 인가를 받은 외국환중개회사의 장은 「규정」 제1-2조제7호에서 규정된 매매기준율과 재정된 매매기준율을 산출하고 매일 영업개시 30분전까지 기획재정부장관, 한국은행총재 및 각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4조(보고) 외국환중개회사의 장은 중개거래 현황 및 중개수수료 결정내용 등을 국제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은행총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5조(자료제출) 국제국장은 외국환중개회사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4-6조(검사) 「규정」 제10-7조제1항에 따른 외국환중개회사의 업무에 대한 검사는 국제국장이 행하며 연 1회 이상 실시할 수 있다.

제4-7조(제재) ① 외국환중개회사가 「규정」 및 이 장에서 정한 사항을 이행하지 않거나 위반할 경우 국제국장은 다음 각호의 제재를 할 수 있다.

1. 과거 1년간 1회 위반 : 주의환기
2. 과거 1년간 2회 위반 : 경고

② 제1항의 위반내용이 중대하다고 판단되거나 과거 1년간 3회 위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업무의 제한 또는 업무의 정지와 인가취소 등을 건의할 수 있다.

제5장 외국환거래 신고 및 사후관리

제5-1조(신고등 기준) ① 「영」 및 「규정」에 따라 위탁된 허가 또는 신고수리를 하고자 하는 경우 「법」 제18조제3항, 「영」 제29조제3항, 「규정」 제9-38조에서 정한 사항을 심사하여야 하며 항목별 세부심사기준은 국제국장이 정한다.

② 「영」 및 「규정」에서 정한 신고, 등록 또는 확인에 관한 처리절차는 국제국장이 정한다.

제5-2조(사후관리) 「규정」 제10-9조 및 제10-10조에 따른 사후관리에 관한 업무처리 기준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국제국장이 정한다.

제5-3조(위임) 제5-1조에서 규정된 허가, 신고수리, 신고, 등록 또는 확인의 업무에 필요한 전결구분, 처리기간, 위임지역본부, 제출서류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은 국제국장이 정한다.

제6장 외국환거래 자료제출 요구 및 검사

제6-1조(자료제출 요구) ① 국제국장은 「영」 제39조제7항 및 「규정」 제10-14조제2항에 따라 외환거래 정보의 신속한 집중과 집중된 자료의 사실여부 확인 등을 위해 외국환업무취급기관등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외국환업무취급기관등은 제1항에 따라 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지체없이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③ 외국환업무취급기관등은 제출을 요구받은 자료를 지체없이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 및 제출예정일자 등을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6-2조(검사 요구 및 공동검사 참여 요구) ① 「영」 제35조제3항제1호나목 및 라목,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금융감독원장에게 검사를 요구하거나 금융감독원장의 검사에 한국은행 직원이 공동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요구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1. 「법」, 「영」, 「규정」, 외환시장과 관련한 한국은행 규정 및 조치사항

의 준수여부를 점검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외화조달 및 운용의 불균형으로 외화유동성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우려되는 금융기관 등의 외환건전성을 점검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외환시장의 과도한 수급 불균형, 환투기, 불공정·과당경쟁, 불·탈법거래 등으로 외환시장의 안정을 저해하거나 저해할 우려가 높은 경우
4. 비예금성외화부채등의 만기·계정별 잔액산정 정확성, 부담금 납부 정확성 등을 점검할 필요가 있는 경우
5. 기타 외환정책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검사 요구 또는 공동검사 참여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검사 목적, 기간, 대상자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공동검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효과적으로 검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해당 금융기관, 외국환거래당사자 및 관계인에 대하여 최소한의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④ 국제국장은 「영」 제35조제3항제1호나에 해당하는 검사의 경우에는 「한국은행의 금융기관 검사요구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검사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6-3조(검사원의 선정 및 의무·권한) ① 금융감독원장과의 공동검사에 참여하는 직원(이하 “검사원”이라 한다)은 국제국 및 공동검사 요구내용과 관련된 부서의 직원으로 하며, 검사원의 선정 및 검사반의 구성은 국제국장이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검사원은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친절·겸손한 자세로 검사업무를 수행하고 중앙은행 직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2. 직무상 알게된 기밀을 누설하거나 다른 목적에 이용하여서는 안된다.
3. 직무와 관련하여 청탁 등 직권을 남용하는 행위를 하거나 직접, 간접을 불문하고 사례·증여 또는 접대를 받을 수 없다.

③ 제1항에 따른 검사원은 검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공동검사 과정에서 발견한 금융기관의 외환거래 내역 중 특이거래 및 외국환거래법령상 위규거래 등(이하 “중점 검사대상거래”라 한다)에 대해 그 사실의 확인 및 거래 주체와 목적 파악 등을 위한 검사대상자 또는 검사대상기관 소속 임직원 등 관계자(이하 “피검사자”라 한다)에

대한 관련 자료 제출 요구

2. 피검사자에 대한 출석 및 진술의 요구
3. 기타 검사상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조치

제6-4조(검사결과 보고 및 시정조치 요구) ① 제6-2조에 따라 금융감독원장에게 검사 요구를 한 경우 국제국장은 그 검사결과를 금융감독원장으로부터 송부받아 한국은행 총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6-2조에 따라 한국은행 직원이 금융감독원장의 검사에 공동으로 참여한 경우 국제국장은 한국은행의 검사결과를 한국은행 총재에게 보고한 후 금융감독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금융감독원장으로부터 최종 검사결과를 송부 받은 경우에는 필요시 보고할 수 있다.

③ 국제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검사결과에 따라 필요한 경우 한국은행 총재에게 보고한 후 금융감독원장에 대하여 해당 피검사자에 대한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제6-5조(검사 사후관리) ① 국제국장은 제6-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고 후 금융감독원장의 조치내용 등을 점검하고 사후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6-4조제3항에 따라 금융감독원장에게 검사결과에 따른 시정조치를 요구한 경우 국제국장은 금융감독원장의 시정조치 결과를 송부받아 한국은행 총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7장 외국환거래 보고대상자에 대한 검사 및 제재

제7-1조(보고대상자에 대한 검사) ① 「영」 제35조제3항제1호다목에 규정된 자에 대한 「규정」 제10-7조제1항에 따른 외국환거래 당사자 또는 관계인 및 금융기관(이하 “보고대상자”라 한다)의 업무에 대한 검사는 국제국장이 행한다.

② 국제국장은 제1항의 검사를 위한 검사의 기준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제7-2조(보고대상자에 대한 제재) ① 「영」 제35조제3항제1호다목에 규정된 자가 외국환거래법규를 위반한 경우 국제국장은 위규사항별 구분에 따라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경고

- 가. 보고서를 제출기한내에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보고요구에도 불구하고 계속 지연시키는 경우

2. 전말서 징구

가. 고의로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보고사항을 누락하는 경우

나. 제1호가목에 대한 시정조치 요구에 불응하는 경우

3. 1년 이내의 범위내에서 관련 외국환거래 또는 지급 등의 정지 또는 제한

가. 관련서류의 허위작성, 위조·변조, 중복사용 또는 허위로 보고하는 경우

나. 최근 1년간 2회이상 경고를 받거나 전말서를 제출한 자가 제1호 내지 제3호의 위반행위를 한 경우

② 국제국장은 제1항의 제재조치를 행할 때는 위규행위의 고의여부, 위규금액의 규모, 여러 위규행위의 경합여부, 위규행위 이후 보완 또는 시정조치 노력여부 등을 감안하여 결정할 수 있다.

③ 국제국장은 제1항에 따른 제재사항이 제1항제3호에 해당되는 경우 제재내역을 각 외국환은행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8장 보고

제8-1조(보고) ① 외국환업무취급기관등, 부담금납부의무자 또는 외국환거래의 당사자가 「규정」 및 이 세칙의 시행과 관련한 보고를 하는 경우에는 국제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은행총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영」 제37조제3항제11호, 「영」 제37조제3항제13호바목 및 「규정」 제10-3조에 따른 보고에 관하여는 국제국장이 정한다.

제9장 보칙

제9-1조(위임) 이 세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제국 절차로 정한다.

부칙 <1999. 3. 31>

① (시행일) 이 세칙은 1999. 4. 1.부터 시행한다

② (허가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세칙 시행전에 종전의 「외국환관리업무 취급세칙」에 의하여 이미 인정된 거래에 대하여는 이 세칙에 의해 인정된 것으로 본다.

③ (거래외국환은행 중복지정 확인에 대한 경과조치) 외환정보집중기관이 거래외국환은행 중복지정 확인업무를 수행하기 전까지 거래외국환은행 지

정 확인 등의 보고 및 중복지정 관련 조치 등의 업무에 관하여는 종전 「외국환관리업무취급세칙」을 적용한다.

- ④ (외국환관리업무취급세칙의 폐지) 「외국환관리업무취급세칙」은 이 세칙 시행과 동시에 폐지한다.

부칙 <2000. 12. 30>

- ① (시행일) 이 세칙은 2001. 1. 1.부터 시행한다.
- ② (신고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세칙 시행전에 종전의 세칙에 의하여 이미 인정된 거래에 대하여는 이 세칙에 의해 인정된 것으로 본다.

(중략)

부칙 <2008. 3. 20>

- ① (시행일) 2008. 3. 25일부터 시행한다.
- ② (기한연장에 관한 경과조치) 2007년 8월 10일 이전에 행한 외화대출중 제 2-9조에 해당하는 외화대출로서 만기가 2008년 1월 1일 이후에 도래하는 외화대출에 대하여는 만기도래일로부터 2년간 제2-9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칙 <2008. 10. 24>

- ① (시행일) 2008. 10. 27일부터 시행한다.
- ② (용도제한에 관한 특례) 이 세칙 시행일 전에 체결된 국내 수출기업의 환해지 목적 통화옵션거래에 따른 외화결제자금에 대하여는 제2-9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칙 <2008. 12. 1>

- ① (시행일) 이 세칙은 2008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② (적용배제) 이 세칙 시행일 현재 제2-9조에 해당하는 외화대출과 그 대출의 만기를 연장하는 대출에 대하여는 제2-9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칙 <2009. 3. 2>

이 세칙은 2009년 3월 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 6. 22>

- ① (시행일) 이 세칙은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② (경과조치) 이 세칙 시행일 전에 종전 세칙에 따라 취급한 외화대출과 그 대출의 만기를 연장하는 외화대출에 대하여는 제2-9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칙 <2010. 7. 9>

- ① (시행일) 이 세칙은 2010년 10월 9일부터 시행한다.
- ② (유예기간중 한도관리) 제1항에도 불구하고 「외국환거래규정」(기획재정부 고시 제 2010-14호) 부칙 제2항 및 제3항의 적용에 필요한 세칙은 위 규정을 고시한 날부터 적용한다.
- ③ (적용유예)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외국환거래규정」(기획재정부 고시 제 2010-14호)을 고시한 날부터 시행일까지는 선물환포지선한도를 매영업일 잔액을 기준으로 관리한다.

부칙 <2011. 7. 15>

이 세칙은 2011년 7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 7. 26>

이 세칙은 2011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